

의안번호	2215541
의 퇴 인	김위상의원
회 답 일	2026.4.21.
추계번호	25B7166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)	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(제3항) 1.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<u>학업(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한다)</u> , 군복무,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7조(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)	×	-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 이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연령·소득·재산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구직촉진수당 지급현황: 2021~2025년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인정인원(명)	340,649	219,527	228,929	251,776	222,177
지급횟수(회)	5.3	5.2	5.3	5.3	5.3

자료: 고용노동부

- 현행법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(이하 “졸업예정자”)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

[표 2] 구직촉진수당(가족수당)을 수급한 졸업예정자 수: 2021~2025년

(단위: 명)

구분		2021	2022	2023	2024	2025
구직촉진수당	소계	38,005	33,657	49,375	63,455	43,965
	(대학교)	36,303	32,625	48,025	61,577	42,063
	(대학원)	1,702	1,032	1,350	1,878	1,902
가족수당		—	—	5,156	8,879	6,827

주: 당해연도 인정인원 기준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‘재학 중’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면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“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”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임
 - 그러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기간에 제한이 있고,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,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¹⁾ 3년이 경과한 후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²⁾ 현재 발생하는 재정소요와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“추가재정소요”가 아닌 재정지출 발생 시점의 차이일 수 있음
 - 즉, 현행법상 졸업예정자가 수급하던 구직촉진수당을 현재 시점이 아닌 졸업까지 2학기 남은 시점에서 앞당겨 수급하고, 졸업 직전에는 수급하지 않을 경우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 소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
 - 다만, 현재 제도에서는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취업 등을 이유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였던 대상자가 개정안의 시행으로 새롭게 구직촉진수당

1) 제20조(지급기간 및 지급절차)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2) 제29조(취업지원 종료 등)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.

을 수급하게 될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사업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새롭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될 사업대상자의 규모는 실업률 및 취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평균 구직준비기간과 미취업 기간 등 고용 여건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신규 수급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[참고자료]

□ 최근 5년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졸업예정자의 수와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“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”의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있으며, 이때,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급횟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
- (사업대상자 수) 최근 5년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 졸업예정자의 수의 평균값을 토대로 산출
 - 최근 5년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졸업예정자의 수와 개정안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의 수가 상이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 - 향후 실업률 및 취업률, 평균 구직준비기간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, 2025년 기준 취업활동 계획 수립률(98.0%)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
- (지급횟수) 2025년 기준 평균 지급횟수를 적용하여 추산하되, 2025년 기준 평균지급횟수(5.3개월)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
- (지원단가) 현행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단가(월 60만원)를 적용하여 산출
 - 향후 지원단가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구직촉진수당, 추정치)

(단위: 억원)

구분	구직촉진수당
인정인원(A, 명)	45,691
취업활동계획 수립률(B, %)	98.0
평균지급횟수(C, 개월)	5.3
단가(D, 백만원)	0.60
추가재정소요(E=A×B×C×D)	1,42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가족수당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최근 3년간 가족수당이 지급된 졸업예정자의 수의 평균값과 이에 대한 2025년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(43만원)을 적용하여 산출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가족수당, 추정치)

(단위: 억원)

구분	가족수당
인정인원(A, 명)	6,954
1인당 지급액(B, 백만원)	0.43
추가재정소요(C=A×B)	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그러나 지금까지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는 ①(사업대상자 수) 최근 5년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한 졸업예정자의 수를 토대로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신규 진입자의 규모를 반영하기 어려우며, ②(재정지출 발생 시점) 현재 발생하는 재정소요와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“추가재정소요”가 아닌 재정지출 발생 시점의 차이일 수 있으며, 수급자가 신청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소요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